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43
----------	-----

2022년 9월 28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안일: 2022년 8월 29일
- 다. 회부일: 2022년 9월 2일
- 라. 상정일: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22년 9월 20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재무국장 정헌재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시기가 2024년 1월 1일로 연기되고, 세무사법 상 세무대리 업무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하는 금액에 대한 용어를 가산금으로 변경(안 제3조제2항제4호)

- 2)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규정에서 공인회계사 관련 세무사법 인용문구를 변경(안 제9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세무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발생 요인 없음).

다. 입법예고(2022. 6. 9. ~ 6. 29.) 결과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)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연기한 부칙 개정(2021.12.28.) 사항과, 지방세 불복제도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세무대리인 선정 및 위촉 요건에 대하여 「세무사법」 및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형태를 반영하여 통일되게 규정하려는 것임.

가. 납부지연가산세 용어 정비(안 제3조제2항제4호)

- 안 제3조제2항제4호는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) 개정*으로 ‘가산금(이하 ‘증가산금’ 포함)’ 등을 ‘납부지연가산세’로 통합**하여 신설 규정한 조항(제55조 제1항)의 시행일(2022.2.3.)**이,

* 법률 제17768호, 2020.12.29. 일부개정, 2022.2.3. 시행

** 부칙 제1조제3호(2022.2.3. 시행)

*납부불성실가산세·가산금 통합 및 용어 등 정비 개정 (지방세기본법, 2022.2.3. 시행) ※ 2024.1.1.로 시행일 연기			
개정 전		개정 후	
가 산 세	무신고가산세	무신고가산세(§53)	가 산 세
	과소신고가산세	과소신고가산세(§54)	
	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	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(§56)	
납부불성실가산세(1일 0.025%)	납부·부과고지 전(1일 0.025%)		
가 산 금	가산금(1회 3%)	고지서 납부기한 경과(1회 3%)	가 산 금
	증가산금(매월 0.75%)	고지서 납부기한 경과(매월 0.75%)	
		납부지연가산세(§55)	

- 부칙(제1조(시행일))의 개정(2021.12.28.)***으로 가산금 등을 통합한 ‘납부지연가산세’ 용어의 사용 시기가 연기(2024.1.1.부터)됨에 따라, 본 조례에서도 종전의 ‘가산금’ 용어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는바,

*** 법률 제17768호, 2020.12.29. 일부개정, 2022.2.3. 시행

<*지방세기본법 부칙 개정 사항 >

- 법률 제18654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, 2022.1.1. 시행 -

종 전(2020.12.29. 일부개정)	현 행 (2021.12.28., 일부개정)
부칙 <법률 제17768호, 2020. 12. 29.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 1. ~ 2. (생략) 3. (전단 생략) 제55조제1항* (후단 생략)의 개정규정: 2022년 2월 3일	부칙 <법률 제17768호, 2020. 12. 29.> 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 ----- ----- <개정 2021.12.28.> ----- 1. ~ 4. (생략) 5. (전단 생략) 제55조제1항 (후단 생략)의 개정규정: 2024년 1월 1일

- 본 조례**** 해당 조문(제3조제4호)에 이를 반영하여 법 부칙 시행일의 개정 조문 시행일(2024.1.1.) 전까지는 현행 ‘납부지연가산세’를 종전의 ‘가산금’ 용어로 사용하도록 되돌리려는 것임.

**** 서울특별시조례 제8030호, 2021. 5. 20., 일부개정, 2022.2.3. 시행

<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 대비표(발체) >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(법 제55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)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(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고액체납액"이라 한다) 가. ~ 다. (생략) ③·④ (생략)	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(법 제2조제1항제24호*에 따른 가산금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〈 관련 현행 지방세기본법 정의 규정 〉

*지방세기본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4. “가산금”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.

〈 가산금 종류(지방세징수법) 〉

구분	조 건	금액	부과횟수
가산금	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시	고지세액의 3%	1회
증가산금	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	고지세액의 0.75%	최대 60개월

- 본 개정안은 각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세 중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체납세액은 서울특별시장에 징수 권한을 환원 받아 직접 징수(38세금징수과)하기 위하여,
 - 이관 기준일(매년 1월 1일) 전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직접 징수 대상 체납세액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〈 서울특별시세 부과·징수 권한의 위임 등 〉

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

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·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(중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·징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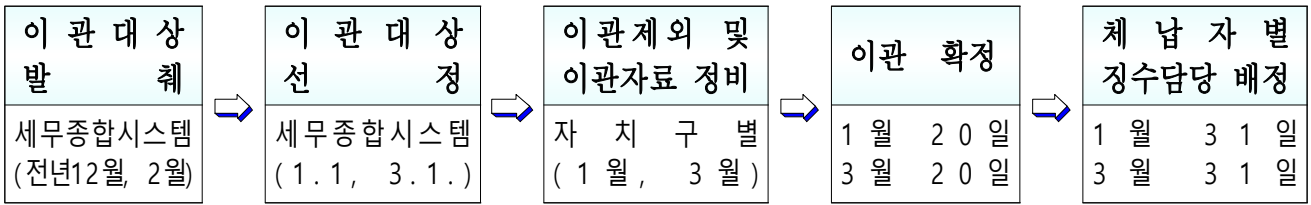
1. ~ 3. (생략)

4.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(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)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(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고액체납액"이라 한다)

가. ~ 다. (생략)

③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〈 고액체납액 이관 업무흐름도 〉



○ 다만, 법 시행 연기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‘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’(이하 “시스템”) 구축 지연에 따른 것으로,

- 본 개정안에 따르면, 법 해당 조문 개정으로 연기된 시행일(2024.1.1.)이 도래할 경우 본 조례를 다시 ‘가산금’을 ‘납부지연가산세’로 개정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,
- 법 시행일 연기(2014.1.1.)에도 불구하고, 이마저도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여 재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바,

※ 재무국에서는 현행 본 조례에 부칙 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의 적용 시기 등을 규정할 수 있음에도, 시스템 구축의 추가 지연으로 시행일(2024.1.1.)이 재 연기될 수 있다는 점과, 이미 시행(2022.2.3.)된 현행 부칙 시행일의 개정으로 인한 소급입법 문제 등에 따라, 법 시행 시기가 명확해 진 다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(출처 재무국 설명자료).

- 재무국에서는 시스템 구축과 이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나. 세무대리인 선정 요건 근거 규정 개정사항 반영(안 제9조제1항)

○ 안 제9조제1항은 「세무사법」에서 세무대리 업무 등록 규정*을 정비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**에서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관련 용어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통일되게 규정하려는 것임.

〈 세무대리 업무 등록 관련 세무사법 규정 〉

* 세무사법(2021.11.23. 일부개정)

제20조의2(세무대리업무 등록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1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(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을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): **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**
2.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(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): **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**

② (이하 생략)

** 지방세기본법, 국세기본법, 조세특례제한법 등

- 먼저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·해촉과 관련한 법령 규정 사항을 살펴보면,

- 법(제9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62조의2)에서는 소득수준이나 소유 재산가액 등의 일정요건*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은,

*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, 소유 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고액·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, 청구 또는 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등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호사, 세무사 또는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‘세무사 등록부’ 또는 ‘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’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

※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나, 2003. 12.31.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개정되었고 다만, 부칙으로 개정 법 시행 당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의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 가능하도록 하였음. 따라서 현재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는 종전의 세무사 등록부 또는 법 개정 이후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.

<지방세기본법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(발체) >

종 전	현 행 2021. 11. 23. 타법개정, 2021. 11. 23. 시행
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"이의신청인등"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	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----- ----- (이하 생략)

- 본 개정조례안(제9제1항)은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문 상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요건을 상위 근거 법 규정에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법 체계의 명확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<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 대비표(발체) >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·해촉 등)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, 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(이하 "선정 대리인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	제9조(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·해촉 등) ① ----- -----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(이하 생략)

다. 기타(부칙)

-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.
-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용어를 가산금 관련 용어로 개정하려는 사항(안 제3조 제2항제4호)은, 본 개정안은 자치구청장에 위임하여 징수한 서울특별시세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체납 지방세를 서울특별시장직이 직접 징수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로 이관받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- 이관 기준일(매년 1월 1일)까지 관련 개정(안) 조문이 시행될 경우에는 해당 체납 지방세의 이관 기준 적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,
-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요건 규정의 개정사항(안 제9조제1항)은 실질적인 법률관계에는 특별한 영향 없이 관련 용어를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,
-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(안) 조문의 적용관계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나, 기득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,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 마련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본 일부개정조례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(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”을 “(법 제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가산금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”를 “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(<u>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는 제외한다</u>)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(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고액체 납액"이라 한다)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9조(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·해촉 등)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, 「<u>세무사법</u>」 제20조의 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 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</p>	<p>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(<u>법 제2조제1항제24호에 따 른 가산금은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·해촉 등) ① ----- ----- ----- 「<u>세무사법</u>」에 따른 <u>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-----</u> -----</p>

(이하 "선정 대리인"이라 한다)
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⑨ (생략)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